

의안번호	2213491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E54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1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7억원(연평균 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.3	-1.3	-1.3	-1.3	-1.3	-6.7	-1.3
- 국세(74.7%)	-1.0	-1.0	-1.0	-1.0	-1.0	-5.0	-1.0
- 지방소비세(25.3%)	-0.3	-0.3	-0.3	-0.3	-0.3	-1.7	-0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	○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 ※ 현재 공중전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9호)인 가운데, 동 개정안은 상기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걸 의원 제안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의결을 전제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중전화 매출액 및 관련 산업(정보통신기술산업) 부가가치율은 추계기간 동안 최근(2024년)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추계방법) 현행 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감안하여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개정안의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조세지출 예상규모(가)와 현행 동 면세 관련 조세지출 추정실적(나)과의 차액(나-가)으로 추계

-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조세지출 예상규모는 '공중전화 용역 공급가액 × 세율 10%'으로 추계

[표 2] 공중전화 용역 공급가액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				
구분	2021	2022	2023	2024
공중전화 공급가액	40	32	26	22

자료: KT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

[표 3]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조세지출 예상규모:
2021~2024년 기준

(단위: 억원)				
	2021	2022	2023	2024
공중전화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	4.0	3.2	2.6	2.2

자료: KT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현행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은 국세청에서 구분·관리하지 않는 관계로, '공중전화 용역 공급가액 × 부가가치율 × 세율 10%'으로 관련 조세지출 실적을 추정
 -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「기업경영분석」 중 우편 및 통신업(J61)¹⁾ 관련 자료 활용

[표 4] 우편 및 통신업 부가가치율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%)				
구분	2021	2022	2023	2024
부가가치율	39.18	39.91	39.74	39.99

자료: 한국은행, 「기업경영분석」, 각년도

[표 5] 현행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추정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				
	2021	2022	2023	2024
공중전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	1.6	1.3	1.0	0.9

자료: KT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자료 및 한국은행 자료(「기업경영분석」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1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7억원(연평균 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억원 감소 예상

[표 6] 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							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.3	-1.3	-1.3	-1.3	-1.3	-6.7	-1.3
- 국세(74.7%)	-1.0	-1.0	-1.0	-1.0	-1.0	-5.0	-1.0
- 지방소비세(25.3%)	-0.3	-0.3	-0.3	-0.3	-0.3	-1.7	-0.3

1) 공영 우편업, 유선·무선·위성 및 기타 전기 통신업(한국은행,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, 2025.10)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